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 일시	2022. 12. 1.(목)
담당 부서	법무실 국가소송과	책임자	국가소송과장 김기수 (02-2110-3202)
		담당자	검사 김영준 (02-2110-3205)

**‘이춘재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 2건 국가 항소 포기**

법무부는 오늘(12. 1.) ‘이춘재화성연쇄살인사건’과 관련하여 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약 20년간 복역한 후 최근 재심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및 ② 사실은 이춘재에게 살해당한 것임에도 담당 경찰관들의 은폐로 단순 가출·실종사건으로 종결된 초등학교 피해자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 배상소송에서 각각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수사기관의 과오가 명백히 밝혀진 사안에 대하여 국가가 그 책임을 인정하고,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오직 상식과 정의를 기준으로 법무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일명 ‘이춘재화성연쇄살인사건(‘86.~’91. 이춘재가 경기도 화성시 일원에서 총 14명의 피해자를 성폭행·살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① 누명 피해자와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및 ② 실종 조작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각각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각 국가배상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살인 누명 피해 사건 (①사건)

《사건 개요》

- ▶ 윤○○가 고문·가혹행위를 동원한 위법수사로 제8차 사건[’88. 9. 16. 발생, 박○○(여, 13세)에 대한 강간살인]의 범인 누명을 쓰고 ’89.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09. 가석방으로 출소할 때까지 약 20년간 복역한 후 피해자와 가족들이 ’20. 재심을, ’21. 국가배상을 각 청구

《1심 판결 요지》

- ▶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등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누명 피해자 윤○○ 및 가족들에게 **합계 21억 7,000만 원**을 지급
 - * 배상금 총액은 약 47억 원이나,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약 25억 원 공제
- ▶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근거로 ① 경찰의 **불법체포·구금 및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 강요, ② 국과수 감정결과에 **심각한 오류와 모순 존재** 등을 설시함

② 초등생 실종 조작 사건 (②사건)

《사건 개요》

- ▶ 이춘재에게 살해된 피해자 김○○(여, 8세)에 대한 실종신고 후 유류품과 신체 일부가 발견되었음에도 경찰이 이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은닉하고, 사건을 단순 가출로 조작했다가 ’19. 검거된 진범 이춘재의 자백으로 진상을 조사한 결과, 당시 담당 경찰관들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하였음이 밝혀져 피해자의 유족들이 ’20. 국가배상을 청구

《1심 판결 요지》

- ▶ 살인사건의 단서를 담당 경찰관들이 의도적으로 은폐·조작하는 등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합계 2억 2,000만 원**을 지급
 - * 피해자의 부모는 소 제기 후 선고 전에 모두 사망
- ▶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근거로 경찰수사팀이 ① 피해자의 유류품이 야산에서 발견되었음에도 피해자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점, ② 내부종합보고서에는 ‘불상자의 개입 가능성’을 기재하고도 사건은 단순 가출·실종으로 처리하는 등 비상식적 사건 처리, ③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발견하고도 다시 파묻은 정황*, ④ 유류품 발견지 인근(30m 거리)에서 별건 피해자 김○○(여, 14세)의 사체가 발견되었음에도 수사 재개에 필요한 조치 미흡 등을 설시, 담당자들의 **의도적 은폐를 인정**
 - * 특히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해자 사체를 발견한 후 다시 파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복수 경찰관들의 진술, ’89. 당시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자가 ‘줄넘기줄’을 소지했는지를 물었는데, 진범 이춘재가 ’19.에 진범으로 특정되어 ‘줄넘기줄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었다’는 자백을 하기 전까지는 본건 범행과 ‘줄넘기줄’의 관련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당시 경찰이 ‘줄넘기줄’로 묶인 피해자의 손목을 포함한 사체의 일부를 발견하였다가 다시 은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

○ 이춘재화성연쇄살인사건의 수사 및 관련 재판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	사건	비고
1986.	9. 15. 이춘재 1차 살인(화성연쇄 1차 사건)	
	10. 20. 이춘재 2차 살인(화성연쇄 2차 사건)	
	12. 12. 이춘재 3차 살인(화성연쇄 3차 사건)	
	12. 14. 이춘재 4차 살인(화성연쇄 4차 사건)	
1987.	1. 10. 이춘재 5차 살인(화성연쇄 5차 사건)	
	5. 2. 이춘재 6차 살인(화성연쇄 6차 사건)	
1988.	12. 24. 이춘재 7차 살인	이춘재 여죄 자백
	9. 7. 이춘재 8차 살인(화성연쇄 7차 사건)	
	9. 16. 이춘재 9차 살인(화성연쇄 8차 사건) - ①사건	
1989.	7. 7. 이춘재 10차 살인- ②사건	이춘재 여죄 자백
	7. 25. 윤○○, ①사건 범인 누명을 쓰고 체포	
	9. 26. 이춘재, 별건 강도예비로 체포	
	10. 20. 수원지법, 윤○○에게 ①사건으로 무기징역 선고	
	12. 11. ①사건 경찰수사팀 특별승진	
	12. 21. ②사건 피해자 유류품 발견 신고	
1990.	4. 19. 이춘재, 강도예비 사건 집행유예 선고, 석방	
	8. 13. ②사건 단순 가출사건으로 종결	
	11. 15. 이춘재 11차 살인(화성연쇄 9차 사건)	
1991.	1. 26. 이춘재 12차 살인	이춘재 여죄 자백
	3. 7. 이춘재 13차 살인	이춘재 여죄 자백
	4. 3. 이춘재 14차 살인(화성연쇄 10차 사건)	
1994.	1. 13. 이춘재 처제 살인	
	1. 17. 경찰, 처제 살인 관련 이춘재 체포	
1995.	10. 23. 대전고법, 처제 살인 관련 이춘재에 무기징역 선고	
2009.	8. 14. ①사건 누명 피해자 윤○○, 가석방으로 출소	
2019.	8. 9. 경찰, 이춘재를 연쇄살인 진범으로 특정	DNA감정결과 확인
	9. 24.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자백	①·②사건 진상 확인
	11. 13. ①사건 누명 피해자 윤○○, 재심 청구	
2020.	1. 14. 수원지법, 윤○○에 대한 재심 개시	
	3. 31. ②사건 피해자 유족, 국가배상청구	
	7. 2. 경기남부청, 이춘재 재수사 사건 수원지검에 송치	
	10. 28. 수원지검, 이춘재 공소권없음(공소시효 만료) 처분	
	12. 17. 수원지법, 윤○○에 재심 무죄 선고	
2021.	6. 17. ①사건 피해자 및 가족, 국가배상청구	
2022.	11. 16. ①사건, 1심 판결 선고	
	11. 17. ②사건, 1심 판결 선고	

- 이 사건들에 관하여 법무부는 이번 사건들이 모두 수사기관의 과오가 명백하게 밝혀진 사안이라는 점에 더하여,
 - ①사건은 불법체포·구금 및 가혹행위 등 반인권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약 20년간 복역하였으며, 출소 후에도 13세 소녀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어온 점 등 그 불법성이 매우 중한 사정 등을,
 - ②사건은 담당 경찰관들의 의도적 불법행위로 피해자의 가족들이 약 30년간 피해자의 사망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였고, 시간이 흘러 사체 수습도 하지 못한 채 애도와 추모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사정 등을 각각 고려하여,
 -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각 사건에 대한 항소를 모두 포기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신속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오직 상식과 정의를 기준으로 법무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